

# 회계예규 개정사항

건설부가 지난 5월 9일에 발표한 예산회계법개정(89. 3. 31) 및 동법시행령개정(89. 12. 29)과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90. 5. 8)에 의거 관련 회계예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회원들은 계약업무에 착오 없기 바란다.

##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 04-102-10, 1990. 5. 8)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등에 지정된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계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정부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원본제시) 또는 자격등록증 사본 1통
3. (삭 제)
4. 인감신고서 1통
5.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3조** (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 2** (설계서의 열람등) ①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 설명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여야 하며, 공사예정 금액이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서를 배부 받아야 한다.

② 입찰자는 설계서를 배부받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3,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작성시 예기하지 못했던 능률적인 시

공방법, 새로운 기계사용등으로 시공하게 됨으로써 저가입찰한 경우.

2. 당해 입찰자가 당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를 시공하고 있거나 시공하게 됨으로써 관계공사의 부산물을 당해공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입찰한 경우(예: 준설 또는 절토공사에서 나온 토사를 이용하여 매립, 성토 정지공사를 하는 경우, 가설재료의 활용등)
3. 당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당해공사와 동종의 공사를 시공하고 있거나 시공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합하여 공사를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입찰한 경우

4. 이미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 당해사업에 필요한 제반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참 고 사 항)

1. 이 회계예규는 1990. 5. 8 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 04-138-4 “저가입찰용요령”을 회계예규 2200. 04-138-5 “저가입찰용요령”으로 한다.

## 저가입찰용요령

(회계예규 2200. 04-138-5, 1990. 5. 8)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99조 제1항 단서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입찰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직접공사비) 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 제1항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직접공사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계약 : 예정가격조서의 공사원가구성요소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계한 금액

2. 공사의 설계·감리용역계약 : 예정가격조서의 원가구성요소중 직접인건비, 제경비의 50%, 기술료의 50%, 직접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계한 금액

다만,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비비율에 의한 금액을 실비 정액가산방식으로 환산하여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산출하며 직접경비는 부대업무비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직접공사비를 산정하여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비치방법에 준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3조** (저가입찰사유서류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공사비 미만인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당해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예산집행심의회의 저가심의기준) ① 예산집행심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로써 당해 공사 또는 공사의 설계·감리용역계약의 적정 이행여부를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진술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으로 인하여 입찰금액이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체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체조합, 전문건설공체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체조합, 전기공사공체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 공체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체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체사업단체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 5.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 예치증서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5조** (입찰)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첩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면허수첩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입찰 및 입찰대리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 (입찰서의 제출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그 입찰 또는 개찰시에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가 입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토목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이외의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입찰서의 산출내역서에 총액으로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붙이는 토목공사에 있어서 그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그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고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삭 제)

**제9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의 입찰(이하 "총액단가입찰"이라 한다)에 있어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중 주요부분을 누락 또는 변경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13. 각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4.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 (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중 정부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9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된다.

1. 당해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은 시행령 제99조 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⑤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3조** (입찰의 연기 등)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불일 수 있다.

**제14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 (삭 제)

**제16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정부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9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